

#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2686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19년 9월 일

제 출 자 : 제 천 시 장

## 1. 제안이유

- 제천시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조성된 자원관리센터(소각, 음식물, 재활용선별, 침출수)의 민간위탁계약 기간(2년)이 2019년 12월말 종료되어 안정적이고,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기술력과 전문 인력을 확보한 운영업체를 다시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함.

## 2. 민간위탁 개요

구 분	내 용	비 고
위탁시설 현 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소 재 지 : 제천시 북부로 1860(신동)</li> <li>· 위탁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소각시설 : 50톤/일</li> <li>- 음식물 : 40톤/일(혐기성소화시설 52m<sup>3</sup>/일 포함)</li> <li>- 침출수 : 240톤/일</li> <li>- 재활용 : 30톤/일</li> </ul> </li> </ul>	
기본방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<u>시의회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 [재계약]</u></li> <li>· 수탁기관의 사무처리,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'재계약' 적정여부를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</li> </ul>	
수탁자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제천시 자원관리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가진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</li> </ul>	

구 분	내 용	비 고
수탁자평가 및 선 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(관리·운영 등) 제4항에 따라 위탁운영기간 연장 가능</li> <li>·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10조 제2항에 따라 위탁한 기관에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 수탁기관의 사무처리, 관리 능력 등을 평가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 판단</li> </ul>	
위탁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2020. 1. 1. ~ 2022. 12. 31.(3년)</li> <li>※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10조(위탁기간 및 재계약)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(관리·운영등)</li> </ul>	
위탁 운영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소각·음식물시설 : 3,207,404(천원)</li> <li>· 침출수시설 : 556,607(천원)</li> <li>· 재활용시설 : 1,183,530(천원)</li> <li>※ 2019년 본예산 금액임.</li> </ul>	
공제보험 가입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제천시 영조물 공제가입</li> </ul>	
제천시 자원관리센터 운영계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연간 운영계획에 의거 운영 원칙</li> <li>· 수탁자로부터 운영계획서 제출 및 월별 처리 실적 보고</li> </ul>	
협약및공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수탁자 선정 후 위탁계약 체결, 계약내용 공증 (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9조(계약체결 등))</li> </ul>	

### 3. 민간위탁 추진일정

-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○ 민간위탁 의회 동의       | 2019. 9월  |
| ○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| 2019. 9월  |
| ○ 심의위원회 개최         | 2019. 10월 |
| ○ 위·수탁협약 체결 및 공증   | 2019. 12월 |
| ○ 위탁개시 및 운영        | 2020. 1월  |

### 4. 민간위탁시 효과성 및 경제성

- 소각·음식물, 침출수, 재활용시설 운영에 관한 전문성, 효율성 확보
- 전문인력 배치에 따른 인력확보의 어려움 해소 및 폐기물처리 시설의 안정적 운영

### 5. 기타사항

- 관련 법령 및 조례 : 별첨

## [별첨]

### ○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

제30조(권한·업무의 위임·위탁) ②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그 관리·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### ○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35조(권한·업무의 위임 등) ③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·운영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1. 「한국환경공단법」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출자한 법인
2. 「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
3.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(해당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
4.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

### ○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

제10조(위탁기간 및 재계약) 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② 시장은 사무를 위탁한 기관에 계속 재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90일전까지 수탁기관의 사무처리,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.

## ○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

제5조(관리·운영 등) ① 시장은 자원관리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 제62조제2항 및 「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」 제30조제2항에 따라 자원관리센터의 관리·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1. 「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」 제35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법인 및 개인
2. 소각시설과 음식물처리시설의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각 시설의 처리용량(소각 50톤/일, 음식물 40톤/일) 규모 이상의 시설을 수탁하여 1년 이상 운영 관리한 경력이 있는 사람
3. 재활용선별시설의 경우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을 고용인력 7명 이상으로 3년 이상 운영 관리한 경력이 있는 사람
4. 침출수처리시설의 경우 폐수관리대행기관을 등록하고 최근 3년 이내에 국가 및 일반 사업장의 처리용량 100톤/일 이상의 폐수처리 시설을 수탁하여 1년 이상 운영 관리한 경력이 있는 사람

② 시장은 소각시설과 음식물처리시설을 일괄 위탁할 수 있다.

③ 자원관리센터의 위탁범위 등 제반사항은 상호간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.

④ 위탁운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.

제6조(수탁기관의 선정) 시장은 제5조에 의하여 위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.

1.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와 기술수준
2. 재정적인 부담능력
3. 책임능력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